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34

발의연월일: 2020. 6. 16.

발 의 자:유의동・정진석・金炳旭

권성동 • 윤희숙 • 권은희

안병길・김 웅・강대식

황보승희 이 용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각 대학에서는 대면수업 대신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갑작스럽게 원격수업이 도입되면서 수업의 질은 낮아지고 학교 시설의 이용이 현저하게 감소함에 따라 학생들은 등록금의 면제 또는 감액을 요구하고 있음.

현재 등록금의 면제·감액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감염병 발생으로 수업의 질이 낮아진 경우는 등록금 면제·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에 등록금의 면제·감액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등 긴급한 사유로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도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으로 하여금 교육서비스의 수준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신설).

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설치·운영 및 제9항의행정적·재정적 제재 등"을 "설치·운영, 제9항의 행정적·재정적 제재 및 제10항의 등록금의 면제·감액 등에"로 한다.

-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1. 학생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 2. 장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천재지변, 감염병 등의 사유로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거나 정상 적인 수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
원회) ① ~ ⑨ (생 략)	원회) ① ~ ⑨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⑩</u>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
	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학생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
	<u>한 경우</u>
	2. 장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경우</u>
	3. 천재지변, 감염병 등의 사유
	로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
	거나 정상적인 수업이 현저
	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
	<u> </u>
<u>⑩</u>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3	<u> </u>
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u>설치</u>	<u>설치</u>
<u>·운영 및 제9항의 행정적·재</u>	·운영, 제9항의 행정적·재정
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적 제재 및 제10항의 등록금의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u>면제·감액 등에</u>